

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

제정 2009. 10. 7 조례 제2220호
일부개정 2012. 1. 6 조례 제2374호
일부개정 2017. 7. 13 조례 제2839호(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)
일부개정 2019. 5. 10 조례 제306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,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 1. 6>

제2조(선정대상)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, 유공납세자(이하 “성실납세자 등”이라 한다)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(매년 1월 1일을 말한다) 현재 안양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, 단체, 법인으로서 해당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1. 6, 2019. 5. 10>

1. 성실납세자: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5년간 계속하여 연간 5건 이상(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,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, 개인균등분주민세,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,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, 담배소비세 제외) 납부기한 내 납부하였으며, 5년간 납부세액이 법인은 1천만원 이상,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
2. 유공납세자: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5천만원 이상,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고 세입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3. 삭제 <2012. 1. 6>

제3조(대상후보의 추천) 구청장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 등의 대상후보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5. 10>

제4조(선정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「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른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. <개정 2012. 1. 6, 2017. 7. 13, 2019. 5. 10>

②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

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 <개정 2019. 5. 10>

제5조(명부관리)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 관리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등이 탈세·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성실납세자 등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9. 5. 10>

제6조(표창장 및 인증)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, 단체, 법인에게 표창장 및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. 6>

제7조(지원)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. 6, 2019. 5. 10>

1. 성실납세자

가. 시 금고를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, 수수료 감면 등 1년간 제공

나. 삭제 <2012. 1. 6>

다.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지급

2. 유공납세자

가. 제1호의 지원과 3년간 세무조사 면제

나.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3년간 한차례 면제

다.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

3. 삭제 <2012. 1. 6>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「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에 대하여는 선정일부부터 1년간 지방세과세증명서·지방세납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. 다만, 발급일 현재 체납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「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「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증이나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

별표 1 비고란의 제8호를 삭제한다.

부칙 <2012. 1. 6 조례 제2374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칙 <2017. 7. 13 조례 제2839호,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46조”를 “제7조”로 하고, “지방세심의위원회”를 “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 생략

부칙 <2019. 5. 10 조례 제306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